2017회계연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의 견서

수신:고성군수

2017회계연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8년 4월 2일 ~ 4월 20일(19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김 상 준
 - · 검 사 위 원 : 이 수 열
 - ·검사 위원:최 삼 식
 - ·검사 위원:제 인 호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고성군수 귀하

2018년 4월 20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고성군 의회로부터 고성군 2017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8년 4월 2일부터 2018년 4월 20일까지(19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7회계연도 고성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고성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고성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공 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 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김 상 준 검사위원 이 수 열 검사위원 최 삼 식

1000 A B B

검사위원 제 인 호

목 차

| Ι. | 결산검사 경과 | 4 |
|-----|---------------------------------|----|
| Π. | 결산검사 총괄 현황 | 5 |
| 1. | 고성군 재정의 개황 | 5 |
| 2. | 세입·세출 결산 | 7 |
| 3. | 기금의 결산 | 22 |
| 4. | 재무제표의 결산 | 24 |
| 5. | 성과보고서 | 26 |
| 6. |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28 |
| ш. | 개선 및 권고사항 | 32 |
| 1. | 학림·청광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정산 재촉구 | 32 |
| 2. | 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철저 | 33 |
| 3. | 대독천 물길복원 및 체험둑방 황토길 조성시설 활용도 제고 | 34 |
| 4. | 맥전포 어촌어항 복합공간 음악분수 사후 관리 철저 | 35 |
| 5. | 고성읍 시가지 가로수 관리 철저 | 36 |
| 6. | 대가면 10리 벚꽃길 관리 철저 | 37 |
| 7. |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테크조성사업 이용률 제고 | 38 |
| 8. | 2017회계연도 결산액 차액 발생 | 39 |
| 9. |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 | 41 |
| 10. | 이월예산 최소화 미흡 | 42 |
| 11. | 예산의 전액 이월사업 사전검토 철저 | 43 |

| 12. | 순수군비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및 추경 미반영 45 |
|-----|----------------------------------|
| 13. | 세출예산 결산액 중 예산전액 미집행액 발생 46 |
| 14. | 이월사업비 미집행 및 불용처리 철저 48 |
| 15. | 국고보조금 반납액 과다 49 |
| 16. | 국·도비 보조금 정리 미흡 50 |
| 17. |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 51 |
| 18. | 하수도 특별회계 존치 검토 52 |
| 19. | 예비비 사용 철저 53 |
| 20. | 세입예산 편성 철저 54 |
| 21.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반영 철저 55 |
| 22. |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부진 56 |
| 23. | 과태료(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 부진 57 |
| 24. | 차량관련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 부진 58 |
| 25. |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발생 최소화 59 |
| 26. | 2017년도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사업 정산 미흡 60 |
| 27. | 가축 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정산 미흡 61 |
| 28. | 덩굴류 제거사업 적극 추진 62 |
| 29. | 성과 분석 결과 원인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미검토 63 |
| 30. |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64 |
| 31. | 성과지표 단위사업 달성 성과 작성 철저 65 |
| 32. | 성과지표 목표치 산정 미흡 66 |
| IV. | 수범사례 67 |
| |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70 |

I.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8. 4. 2. ~ 2018. 4. 20.(19일간)

2. 결산검사위원

| 직 | 위 | 성 명 | 담 당 업 무 | 비고 | |
|----|----|-------|-----------------------|----|--|
| 대표 | 위원 | 김 상 준 | 검사 총괄 | | |
| 위 | 원 | 이 수 열 | 세입세출 및 주요사업, 현안사업 | | |
| 위 | 원 | 최 삼 식 | 성과보고서 및 보조금 집행 | | |
| 위 | 원 | 제 인 호 | 세입세출 및 금고 결산, 재무제표 관련 | | |

3. 결산검사 세부일정

| 구 분 | 일 자 별 | 결 산 검 사 내 용 | 비고 |
|-------------|-----------------------------|------------------------|----|
| 군 본청 | 4.02~4.13 | 재정상황 파악 및 결산내용 적정여부 검토 | |
| 군 의회 | 군 의회 4.16 세입세출 결산내용 검토 | | |
| 직속기관 | 지속기관 4.17~4.18 세입세출 결산내용 검토 | | |
| 사 업 소 4. 19 |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 검토 | |
| 4. 20 | | 결산검사 총괄정리 | |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고성군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원, %)

| 구 분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 세입 | 405,393,474 | 445,525,452 | 431,686,409 | 461,597,911 | 516,707,671 |
| 일반회계 | 세출 | 317,436,731 | 339,122,560 | 337,085,987 | 351,703,108 | 380,056,303 |
| | 결산상잉여금 | 87,956,743 | 106,402,892 | 94,600,422 | 109,894,803 | 136,651,368 |
| | 세입 | 29,780,030 | 36,320,029 | 39,394,014 | 45,698,414 | 58,814,722 |
| 특별회계 | 세출 | 13,564,845 | 13,324,664 | 11,930,897 | 13,253,987 | 20,704,908 |
| | 결산상 잉여금 | 16,215,185 | 22,995,365 | 27,463,117 | 32,444,427 | 38,109,814 |
| | 수입 | 14,918,449 | 1,594,644 | 2,568,011 | 2,582,234 | 4,774,915 |
| 기금 | 지출 | 962,737 | 177,345 | 853,675 | 658,364 | 636,940 |
| | 결산상 잉여금 | 13,955,712 | 1,417,299 | 1,714,336 | 1,923,870 | 4,137,975 |
| | 세입(수입) | 450,091,953 | 483,440,125 | 473,648,434 | 509,878,559 | 580,297,308 |
| 총계 | 세출(지출) | 331,964,313 | 352,624,569 | 349,870,559 | 365,615,459 | 401,398,151 |
| | 결산상 잉여금 | 118,127,640 | 130,815,556 | 123,777,875 | 144,263,100 | 178,899,157 |

O 2017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늘어난 것은 회계별 세입(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늘어난데 기인한 것이며, 세출은 전년도에 비해 결산상 잉여금이 178,899,157천원으로 전년대비 24%가 증가하였다.

○ 결산상 잉여금 178,899,157천원은 총 세입의 31% 수준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

고성군 자치단체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비고 |
|----------------------|------------|------------|-----------|---------|---------|----|
| 자치단체 채무계 a(b+c+d) | 18,062,400 | 12,772,400 | 8,318,400 | 816,400 | 374,400 | |
| 공채 b | 0 | 0 | 0 | 0 | 0 | |
| 차입금 c | 18,062,400 | 12,772,400 | 8,318,400 | 816,400 | 374,400 | |
| 채무부담행위 d | 0 | 0 | 0 | 0 | 0 | |
| 지방공기업 채무 e | 0 | 0 | 0 | 0 | 0 | |
| 채무총합계 f(a+e) | 18,062,400 | 12,772,400 | 8,318,400 | 816,400 | 374,400 | |

- 2016년도에는 816,400천원의 차입금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54% 상환 함으로써 2017년도부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이는 실제적으로 중앙정부(환경관리공단) 고성하수종말처리장 하수 슬러지 설치사업 차임금으로 전액 국고로 상환되고 있어 실제적 자체 채무는 전무한 상태임.

(2) 재정건전성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훈령)에 의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지표를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다.

고성군 재정위험 판단 지표

| 관점 | 재정지표 | 산정방식 | 주의기준 | 고성군 기준 | 삼 (위) 7준 |
|---------------|--------------|---------------------------------------|------------|-----------|------------------|
| - 채무 관리 | ① 예산대비채무비율 | <u>지방채무 잔액</u> 총예산 | 25% 초과 | 0.07% | 양호 |
| 관리 | ② 채무상환비 비율 | _ 지방채무 상환액 일반재원 | 12% 초과 | 1.00% | 양호 |
| 세입 관리 | ③ 지방세 징수액현황 |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 50% 미만 | 15.6% | 양호 |
| 자금 관리 | ④ 금고잔액 현황 | <u>당해연도 분기말 잔고</u>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 20% 미만 | 0.40% | 양호 |
| 공기업 | ⑤ 공기업 부채비율 | <u>부</u> 채 순 자 산 | 400% 초과 | 해당 없음 | 해당없음 |
| | ⑥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 | | | |

○ 재정자립도 : 8.2%

○ 재정자주도 : 51.0%

➤ 고성군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어 재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하겠음.

➤ 재정자립도는 전년의 11.3%에서 8.2%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회계별 | | 예 산 현 액 | 세입결산액(A) | 세출결산액(B) | 결산상 잉여금 (C =A-B) |
|-----|---------------------|-------------|-------------|-------------|---------------------|
| | 합계 | 555,157,073 | 575,522,393 | 400,761,211 | 174,761,182 |
| | 일반회계 | 496,700,891 | 516,707,671 | 380,056,303 | 136,651,368 |
| | 특별회계 | 58,456,182 | 58,814,722 | 20,704,908 | 38,109,814 |
| | 기타특별회계 | 58,456,182 | 58,814,722 | 20,704,908 | 38,109,814 |
| | 상수도사업 | 10,966,282 | 11,095,050 | 8,875,456 | 2,219,594 |
| | 하수도사업 | 3,192,851 | 3,467,486 | 780,917 | 2,686,569 |
| | 산업단지조성사업 | 7,202,664 | 7,086,132 | 3,381,915 | 3,704,217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5,497,175 | 5,503,220 | 4,676,824 | 826,396 |
| | 중소기업육성자금 | 4,690,199 | 4,696,855 | 158,044 | 4,538,811 |
| | 주차장 | 3,136,143 | 3,140,191 | 1,258,592 | 1,881,599 |
| | 수질개선 | 92,551 | 92,318 | 76,498 | 15,820 |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 559,344 | 558,645 | 533,660 | 24,985 |
| | 농어촌발전자금 | 8,950,405 | 8,956,372 | 137,288 | 8,819,084 |
| | 사회복지 | 4,424,533 | 4,397,031 | 825,714 | 3,571,317 |
| | 고성군청사건립 | 9,744,035 | 9,821,422 | 0 | 9,821,422 |

(단위 : 천원)

| 회 계 별 | 현년도 | 이 월 액(D) | | | | | |
|---------------------|------|---------------------------|-------------------------|-----|-----------|------------|--|
| 외계별 | 채무상환 | 명시 | 사고 | 계속비 | 보조금 집행잔액 | 순세계잉여금 | |
| 합 계 | 0 | 63,550,887 (2,906,864) | 13,344,883 (497,000) | 0 | 3,140,938 | 94,724,473 | |
| 일반회계 | 0 | 58,880,890 (2,906,864) | 13,284,223 (497,000) | 0 | 2,785,319 | 61,700,935 | |
| 특별회계 | 0 | 4,669,997 | 60,660 | 0 | 355,619 | 33,023,538 | |
| 기타특별회계 | 0 | 4,669,997 | 60,660 | 0 | 355,619 | 33,023,538 | |
| 상수도사업 | 0 | 14,700 | 60,660 | 0 | 0 | 2,144,234 | |
| 하수도사업 | 0 | 14,700 | 0 | 0 | 0 | 2,671,868 | |
| 산업단지조성사업 | 0 | 3,625,771 | 0 | 0 | 7 | 78,439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0 | 0 | 0 | 0 | 355,612 | 470,784 | |
| 중소기업육성자금 | 0 | 0 | 0 | 0 | 0 | 4,538,811 | |
| 주차장 | 0 | 1,014,826 | 0 | 0 | 0 | 866,773 | |
| 수질개선 | 0 | 0 | 0 | 0 | 0 | 15,820 |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 0 | 0 | 0 | 0 | 0 | 24,986 | |
| 농어촌발전자금 | 0 | 0 | 0 | 0 | 0 | 8,819,084 | |
| 사회복지 | 0 | 0 | 0 | 0 | 0 | 3,571,318 | |
| 고성군청사건립 | 0 | 0 | 0 | 0 | 0 | 9,821,421 | |

※ ()는 자금 없는 이월임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75,522,393천원으로 예산액보다 20,365,320천원이 더 수납되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0%인 400,761,211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4,761,182천원이다.

- 이중 명시이월비 63,550,887천원, 사고이월비 13,344,883천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3,140,938천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94,724,473천원이다.
- 전년도에 비해 이월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전년도에 비해 7,785,753천원이 증가한 94,724,472천원으로 이는 너무 과다한 이월액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재원사장의 결과를 초래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 구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결 산 액 | 496,700,891 | 524,521,415 | 516,707,671 | 1,249,445 | 6,564,299 |
| 결산확인액 | 496,700,891 | 524,521,415 | 516,707,671 | 1,249,445 | 6,564,299 |
| 차 액 | 0 | 0 | 0 | 0 | 0 |

○ 세입결산 개요

- ➤ 수납액 516,707,671천원은 예산액의 104%로서 20,474,537천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의 증가 요인이며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증가에 기인하였다.
- ➤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5%로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1,249,445천원으로서 지방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124,352천원, 무재산 852,509천원, 배분금액 부족 27,345천원으로 발생되었는바, 그 가운데 시효소멸로 32,528천원이 불납결손 처분된 사실이 있었으며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 이월체납액 소폭 증가

- ➤ 최근 2년간 이월체납액을 보면 2017년도에는 6,564,299천원으로 전년대비 1.1%가 증가되었고, 그 중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경우 3,830,057천원으로 △0.1%의 소폭으로 감소되었으나 보다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요망됨.
- O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다.
- **불납결손처분**은 1,249,445천원이 발생되었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분 한 것으로 검사결과 적정하게 검토되었다.
- O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 수납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액 |
|-------------|-------------|----|
| 516,707,671 | 516,707,671 | 0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 연도별 | 예 산 액 | 징 수 결 정 액 | 수 납 액 | 불 납 결손액 | 예산대비 장수결정액 | 징수결정 대비 수 납액 | 장수결정대비 불납결손액 |
|------|-------------|--------------|-------------|------------|---------------|-------------------------------|-----------------|
| 2017 | 445,412,575 | 524,521,415 | 516,707,671 | 1,249,445 | 117.8% | 98.5% | 0.24% |
| 2016 | 403,242,389 | 469,039,011 | 461,597,911 | 950,755 | 116.4% | 98.4% | 0.20% |
| 중감 | 42,170,186 | 55,482,404 | 55,109,760 | 298,690 | - | 1 | - |

-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461,597,911천원 보다 55,109,760천원이 많은 516,707,671천원이 수납되었다.
- O 매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되고 있고 2017년에는 79,108,840 천원으로 이는 세입예산의 예측이 세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950,755천원 보다 298,690천원이 증가한 1,249,445 천원이다.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거소불명 124,352천원, 무재산 852,509천원, 시효소멸 32,528천원, 배분금액부족 27,345천원, 기타 212,711천원이다.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 Ä | 그 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불납결손 | 미수납액 |
|------|----------|-------------|-------------|-------------|-----------|-----------|
| ŏĻ | 計 계 | 496,700,891 | 524,521,415 | 516,707,671 | 1,249,445 | 6,564,299 |
| | 소 계 | 28,000,000 | 34,672,143 | 31,088,051 | 849,851 | 2,734,241 |
| | 주민세 | 1,500,000 | 1,738,142 | 1,685,191 | 165 | 52,786 |
| | 재산세 | 7,500,000 | 8,883,925 | 8,565,009 | 16,724 | 302,192 |
| 지방세 | 자동차세 | 5,000,000 | 6,427,792 | 5,795,965 | 8,932 | 622,895 |
| | 담배소비세 | 4,200,000 | 4,199,730 | 4,199,730 | 0 | 0 |
| | 지방소득세 | 9,500,000 | 11,218,988 | 10,296,707 | 422,885 | 499,396 |
| | 지난년도수입 | 300,000 | 2,203,566 | 545,449 | 401,145 | 1,256,972 |
| | 소 계 | 13,615,512 | 24,329,569 | 20,099,917 | 399,594 | 3,830,058 |
| | 재산임대수입 | 224,613 | 255,986 | 239,619 | 0 | 16,367 |
| | 사용료 수입 | 3,690,738 | 3,879,873 | 3,833,935 | 842 | 45,096 |
| | 수수료 수입 | 1,648,118 | 1,883,849 | 1,859,860 | 0 | 23,989 |
| | 징수교부금수입 | 1,285,000 | 1,194,222 | 1,193,948 | 0 | 274 |
| 세외수입 | 사업수입 | 727,050 | 1,284,550 | 1,284,550 | 0 | 0 |
| 게러기법 | 이자수입 | 1,861,063 | 1,728,331 | 1,728,299 | 0 | 32 |
| | 재산매각수입 | 2,000 | 48,297 | 48,297 | 0 | 0 |
| | 부담금 | 56,464 | 204,060 | 185,066 | 0 | 18,994 |
| | 과징금및과태료등 | 204,000 | 894,792 | 391,012 | 1,156 | 502,624 |
| | 기타수입 | 3,811,966 | 9,038,801 | 8,947,803 | 0 | 90,998 |
| | 지난연도 수입 | 104,500 | 3,916,808 | 387,528 | 397,596 | 3,131,684 |
| 지 | 방교부세 | 169,931,701 | 175,356,682 | 175,356,682 | 0 | 0 |
| 조정 | 교부금 등 | 16,000,000 | 28,718,821 | 28,718,821 | 0 | 0 |
| 보조금 | | 158,658,407 | 151,423,685 | 151,423,685 | 0 | 0 |
| 보전수입 |] 등및내부거래 | 110,495,271 | 110,020,515 | 110,020,515 | 0 | 0 |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6.0%인 31,088,051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9%인 20,099,917천원이 수납되고, 지방교부세는 33.9%인 175,356,682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5.6%인 28,718,821천원, 보조금 등은 29.3%인 151,423,685천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 구 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 결 산 액 | 445,412,575 | 496,700,891 | 380,056,303 | 75,568,978 | 41,075,610 |
| 결산확인액 | 445,412,575 | 496,700,891 | 380,056,303 | 75,568,978 | 41,075,610 |
| 차 액 | 0 | 0 | 0 | 0 | 0 |

○ 세출결산 개요

- ▶ 예산액은 445,412,575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51,288,316천원이 이월되어 합한 예산현액은 496,700,891천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액 의 0.02%인 83,400천원이었으며,
- ▶ 이용 및 이체는 예산액의 0.25%인 1,113,800천원으로서 고성군 행정 기구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에 따라 일반행정, 보육·가족 및 여성, 보건의료 지원 사업에 기인함
- ▶ 예비비사용액은 1,949,946천원으로서 지출내역에 있어 예비비예산에서 한해대책사업과 긴급가축방역 사업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실이었었음.
-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5%에 해당하는 380,056,303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75,568,978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61,787,754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3,781,223천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대독천 체험 둑방 황톳길 조성사업)의 보상협의 지연과청소년시설 부지 정비사업 건립부지 최종선정 지연,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공기부족 등에 기인함.

-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3%에 해당하는 41,075,610천원이었으며 불용 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해양레포츠 조성사업과 한국해양레포츠 기술 연수원 설립 사업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에 기인함.
- ➤ 이월액과 불용액이 116,644,588천원으로 예산현액의 23.4%에 달하고 있어 이월액 최소화와 과다한 잉여금을 바로잡아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세출예산액

▶ 예산액은 군금고 결산현황 380,056,303천원과 결산서의 결산액 380,056,303천원이 부합되어 있었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 | | (2.1) 2.2) |
|-------------|-------------|------------|
| 지출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 액 |
| 380,056,303 | 380,056,303 | 0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천원,%)

| P | 2016년도 | 201 | 7회계연도 | | 전년대비중감 | |
|-----------|-------------|-------------|-------------|-------|------------|--------|
| 구 분 | 지출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율 | 금액 | 비율 |
| 합 계 | 351,703,108 | 496,700,891 | 380,056,303 | 76.52 | 28,353,195 | 8.06 |
| 일반공공행정 | 13,962,248 | 15,468,738 | 14,585,573 | 94.29 | 623,325 | 4.46 |
| 공공질서 및 인전 | 2,624,121 | 2,777,800 | 2,730,296 | 98.29 | 106,175 | 4.05 |
| 교 육 | 4,627,716 | 4,647,699 | 4,479,416 | 96.38 | △148,300 | △3.20 |
| 문화및관광 | 33,056,038 | 37,148,994 | 25,463,025 | 68.55 | △7,593,013 | △22.97 |
| 환경보호 | 32,482,759 | 39,677,271 | 29,756,544 | 75.00 | △2,726,215 | △8.39 |
| 사회복지 | 70,930,202 | 81,495,801 | 76,619,139 | 94.02 | 5,688,937 | 8.02 |
| 보 건 | 4,886,290 | 6,651,318 | 5,454,784 | 82.01 | 568,494 | 11.63 |
| 농림해양수산 | 75,695,847 | 117,290,694 | 94,057,169 | 80.20 | 18,361,322 | 24.26 |
| 산업·중소기업 | 4,536,534 | 14,066,023 | 13,131,318 | 93.36 | 8,594,784 | 189.46 |
| 수송및교통 | 16,966,464 | 27,012,625 | 16,845,329 | 62.36 | △121,135 | △0.71 |
| 국토및지역개발 | 37,398,342 | 61,725,362 | 39,196,799 | 63.51 | 1,798,457 | 4.81 |
| वी भी भी | 0 | 29,867,046 | 0 | 0 | 0 | 0 |
| 기 타 | 54,536,547 | 58,871,520 | 57,736,911 | 98.08 | 3,200,364 | 5.87 |

○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농림해양수산 94,057,169천원, 사회복지 76,619,13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39,196,799 환경보호 29,756,544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산업·중소기업 13,131,318천원이며 문화 및 관광 △22.97%, 환경보호 기능으로 △8.39%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3) 특별회계 가.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 구 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합 계 | 58,456,182 | 59,677,109 | 58,814,722 (58,815,300) | 71,731 | 790,656 |
| 특별회계 | 58,456,182 | 59,677,109 | 58,814,722 (58,815,300) | 71,731 | 790,656 |
| 기타특별회계 | 58,456,182 | 59,677,109 | 58,814,722 (58,815,300) | 71,731 | 790,656 |
| 상수도사업 | 10,966,282 | 11,269,431 | 11,095,050 | 67,619 | 106,762 |
| 하수도사업 | 3,192,851 | 3,492,105 | 3,467,486 | 4,112 | 20,507 |
| 산업단지조성사업 | 7,202,664 | 7,086,132 | 7,086,132 | 0 | 0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5,497,175 | 5,503,220 | 5,503,220 | 0 | 0 |
| 중소기업육성자금 | 4,690,199 | 4,696,855 | 4,696,855 | 0 | 0 |
| 주차장 | 3,136,143 | 3,803,578 | 3,140,191 (3,140,251) | 0 | 663,387 |
| 수질개선 | 92,551 | 92,318 | 92,318 | 0 | 0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559,344 | 558,645 | 558,645 | 0 | 0 |
| 농어촌발전자금 | 8,950,405 | 8,956,372 | 8,956,372 | 0 | 0 |
| 사회복지 | 4,424,533 | 4,397,031 | 4,397,031 (4,397,549) | 0 | 0 |
| 고성군청사건립 | 9,744,035 | 9,821,422 | 9,821,422 | 0 | 0 |
| 결산확인액 | 58,456,182 | 59,677,109 | 58,815,300 | 71,731 | 790,656 |
| 차 액 | 0 | 0 | 578 | 0 | 0 |

^{※()}는 금고결산 실제 수납액임.

○ 세입결산 개요

- ➤ 수납액 58,814,722천원은 예산현액의 100.6%로서 358,540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금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6%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0.3%가 높아졌는바 이는 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된데 기인함.
- ➤ 불납결손액은 71,731천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 완성에 기인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3%인 790,656천원 으로서 이는 주로 납기미도래, 정리유예에 기인한 것임.

○ 세입결산액

➤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 58,815,300천원은 세입결산액과 부합되지 않아 주차장 및 사회복지 특별회계 운용부서에서 입출금 계좌착오 (수납 및 반납)로 인하여 차액이 578천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으며,

○ 불납결손처분

▶ 71,731천원이 발생되었으나 검사결과 처분사유가 적정하였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 수납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액 |
|------------|-------------|-----|
| 58,814,722 | 58,815,300 | 578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이 위와 같았다.

나.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 구 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 합 계 | 57,221,523 | 58,456,182 | 20,704,907 (20,705,485) | 4,730,657 | 33,020,618 |
| 특별회계 | 57,221,523 | 58,456,182 | 20,704,907 (20,705,485) | 4,730,657 | 33,026,618 |
| 기타특별회계 | 57,221,523 | 58,456,182 | 20,704,907 (20,705,485) | 4,730,657 | 33,026,618 |
| 상수도사업 | 10,550,015 | 10,966,282 | 8,875,456 | 75,360 | 2,015,466 |
| 하수도사업 | 3,175,351 | 3,192,851 | 780,917 | 14,700 | 2,397,234 |
| 산업단지조성사업 | 7,086,129 | 7,202,664 | 3,381,915 | 3,625,771 | 194,978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4,847,175 | 5,497,175 | 4,676,824 | 0 | 820,351 |
| 중소기업육성자금 | 4,690,199 | 4,690,199 | 158,044 | 0 | 4,532,155 |
| 주차장 | 3,101,786 | 3,136,143 | 1,258,592 (1,258,652) | 1,014,826 | 862,725 |
| 수질개선 | 92,551 | 92,551 | 76,498 | 0 | 16,053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 559,344 | 559,344 | 533,660 | 0 | 25,684 |
| 농어촌발전자금 | 8,950,405 | 8,950,405 | 137,288 | 0 | 8,813,117 |
| 사회복지 | 4,424,533 | 4,424,533 | 825,713 (826,231) | 0 | 3,598,820 |
| 고성군청사건립 | 9,744,035 | 9,744,035 | 0 | 0 | 9,744,035 |
| 결산확인액 | 57,221,523 | 58,456,182 | 20,705,485 | 4,730,657 | 33,020,618 |
| 차 액 | 0 | 0 | 578 | 0 | 0 |

^{※()}는 금고결산 실제 수납액임

○ 세출결산 개요

- ➤ 예산액은 57,221,523천원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1,234,659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8,456,182천원이었으며, 예산이용과 예비비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음.
-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5.4%에 해당하는 20,704,907천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4,669,997천원과 사고이월 60,660천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산업단지 관리사업(자체)의 토지보상 및 설계용역을 위한 추진기간 부족과 대중교통·물류 등 주차장 조성이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6.5%에 해당하는 33,020,618천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하수도시설 개량사업비의 이월과 중소기업육성자금, 농어촌발전자금, 청사건립특별회계 등 기금성 특별회계의 자금관리와 관계된 이월로 인한 것임.

○ 세출결산액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 20,704,907천원과 부합되지 않아 주차장 및 사회복지 특별회계 운용부서에서 입출금 계좌착오(수납 및 반납)로 인하여 차액이 577,818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용과 전용은 없었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 지출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액 |
|------------|-------------|-----|
| 20,704,907 | 20,705,485 | 578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이 위와 같았다.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계속비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 천원)

| 7 12 | 계· | 속비이월 | ī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 |
|----------|----|------|----|---------------------------|------|-------------------------|----|
| 구 분 | 내역 | 금액 | 내역 | 금액 | 내역 | 금액 | 비고 |
| 합계 | | 0 | | 66,457,751 (2,906,864) | | 13,841,883 (497,000) | |
| 일반회계 | | 0 | | 61,787,754 (2,906,864) | | 13,781,223 (497,000) | |
| 일반공공행정 | | 0 | | 0 | | 0 | |
| 공공질서및 인전 | | 0 | | 0 | | 0 | |
| 교 육 | | 0 | | 0 | | 0 | |
| 문화및관광 | | 0 | | 8,910,816 | | 2,129,192 | |
| 환경보호 | | 0 | | 8,335,203 | | 779,823 | |
| 사회복지 | | 0 | | 2,416,706 | | 74,569 | |
| 보 건 | | 0 | | 700,000 | | | |
| 농림해양수산 | | 0 | | 15,082,080 | | 4,417,697 | |
| 산업·중소기업 | | 0 | | 345,413 | | 408,107 | |
| 수송및교통 | | 0 | | 6,527,299 | | 3,200,804 | |
| 국토및지역개발 | | 0 | | 19,470,237 (2,906,864) | | 2,771,031 (497,000) | |
| 예비비 | | 0 | | 0 | | 0 | |
| 기 타 | | | | 0 | | 0 | |
| 기타특별회계 | | 0 | | 4,669,997 | | 60,660 | |
| 상수도 | | 0 | | 14,700 | | 60,660 | |
| 하수도 | | 0 | | 14,700 | | 0 | |
| 신업단지조성시업 | | 0 | | 3,625,771 | | 0 | |
| 주차장 | | 0 | | 1,014,826 | | 0 | |

※ ()는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 검사결과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13,841,883천원이며, 명시 이월비는 66,457,751천원임이 확인되었다.

3. 기금의 결산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금현황

(단위: 천원)

| | 전년도말 | 당히 | | 당해연도말 | |
|----------|-----------|--------------|-----------|---------|-----------|
| 구분 | 조성액 | 증가 또는 감소액 | 조성액 | 사용액 | 조성액 |
| 계 | 1,923,870 | 2,214,105 | 2,851,045 | 636,940 | 4,137,975 |
| 재난관리기금 | 1,897,385 | 218,749 | 845,039 | 626,290 | 2,116,134 |
| 식품진흥기금 | 26,485 | △4,688 | 5,962 | 10,650 | 21,797 |
| 재정안정화적립금 | 0 | 2,000,044 | 2,000,044 | 0 | 2,000,044 |

 ○ 2017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1,923,870천원
 에 당해연도 조성액 2,851,045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636,940천원을 공제한 4,137,975천원이다.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5년 평균 증 율 |
|--------------|--------|-------|-------|-------|-------|-----------|
| 전년도말 조성액 | 13,704 | 1,088 | 1,417 | 1,714 | 1,924 | △38.8 |
| 당해연도 조성액 | 1,214 | 507 | 1,151 | 868 | 2,851 | 23.8 |
| 당해연도 사용액 | 963 | 177 | 854 | 658 | 637 | △9.8 |
| 당해연도말 조성액 | 13,956 | 1,417 | 1,714 | 1,924 | 4,138 | △26.2 |

○ 고성군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26.2%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 △9.8% 낮기 때문이다

기금운용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전년도 이월 (사고 등) | 수 입 | 지 출 |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
|----------|------------------|-----------|-----------|--------------------|
| 계 | 63,309 | 4,711,606 | 4,655,936 | 118,979 |
| 재난관리기금 | 63,309 | 2,679,115 | 2,623,445 | 118,979 |
| 식품진흥기금 | 0 | 32,447 | 32,447 | 0 |
| 재정안정화적립금 | 0 | 2,000,044 | 2,000,044 | 0 |

O 검사결과 재난관리기금의 2개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118,979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55,670천원이 증가한 것이다. 본년도에 기금의 지출액은 4,655,936천원이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하였다.

4. 재무제표의 결산

2017회계연도 고성군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 | н | 0017 | 0017 | 전년 대 | 비 중감 |
|---------|-----------|----------------|---------------|-------------|--------|
| 구 | 분 | 2017 | 2016 | 금 액 | 비 율 |
| 자 | 산 | 2,010,470,037 | 1,907,598,985 | 102,871,052 | 5.39 |
| I. 유 | 동 자 산 | 180,829,748 | 144,663,077 | 36,166,671 | 25.00 |
| Ⅱ. 투 | 자 자 산 | 14,975,118 | 14,706,730 | 268,388 | 1.82 |
| Ⅲ. 일 반 | 유형자산 | 78,775,713 | 77,348,458 | 1,427,255 | 1.85 |
| IV. 주 민 | l 편 의 시 설 | 318,448,376 | 306,682,707 | 11,765,669 | 3.84 |
| V. 사회 | 기반시설 | 1,416,692,710 | 1,363,329,335 | 53,363,375 | 3.91 |
| VI 기타 | 비유동자산 | 748,372 | 868,678 | △120,306 | △13.85 |
| 부 | 채 | 12,719,912 | 10,164,447 | 2,555,465 | 25.14 |
| I. 유 | 동 부 채 | 8,136,020 | 5,919,672 | 2,216,348 | 37.44 |
| Ⅱ. 장기 | 차 입 부 채 | 149,200 | 374,400 | △225,200 | △60.15 |
| Ⅲ. 기타 | 비유동부채 | 4,434,692 | 3,870,375 | 564,317 | 14.58 |
| 순 | 자 산 | 1,997, 750,125 | 1,897,434,538 | 100,315,587 | 5.29 |
| I. 고 7 | 성 순 자 산 | 1,814,113,356 | 1,747,208,698 | 66,904,658 | 3.83 |
| Ⅱ. 특 7 | 성 순 자 산 | 4,156,455 | 1,919,531 | 2,236,924 | 116.53 |
| Ⅲ. 일 변 | 반 순 자 산 | 179,480,314 | 148,306,309 | 31,174,005 | 21.02 |

 ○ 2017회계연도말 고성군의 자산은 2,010,470,037천원으로 전년도의 102,871,052 천원(5.39%)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증금, 무형자산 등 기타비유동자산이 △120,306천원(△13.85%) 감소하였으나 전년에 비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수익의 증가로 유동자산 36,166,671천원(25%)과 사회기반시설 53,363,375천원 (3.91%)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2017회계연도말 고성군의 부채는 12,719,912천원으로 전년도의 10,164,447천원보다 2,555,465천원(25.14%)이 증가하였는데 유동부채가 2,216,348천원(37.44%)증가함에 따라 장기차입부채 등이 △225,200천원 (△60.15%)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 | | 분 | | 2017 | 2017 2016 | | 미 중감(-) |
|------|--------|--------------------|-------------|---------------|--------------|--------------|---------|
| | 구 | 七 | | 2017 | 2016 | 금 액 | 비 율 |
| Ι. | 사 (| | 원 가 나) | 80,238,784 | 92,654,123 | (12,415,339) | (13.40) |
| 가. | . 사 | 업 총 유 | 원 가 | 220,923,529 | 199,442,866 | 21,480,663 | 10.77 |
| 나 | . 사 | 업 수 | 익 | 140,684,745 | 106,788,743 | 33,896,002 | 31.74 |
| П. | 관 | 리 운 역 | 경 비 | 56,470,669 | 54,506,326 | 1,964,343 | 3.60 |
| Ⅲ. | 비 | 배 분 ㅂ | 비 용 | 38,128,021 | 37,210,499 | 917,522 | 2.47 |
| IV. | 刊 | 배 분 수 | 수 익 | 26,448,716 | 29,147,881 | (2,699,165) | (9.26) |
| V. | | 정 운 영 순 + Ⅱ + Ⅲ | | 148,388,758 | 155,223,067 | (6,834,309) | (4.40) |
| VI. | 일 | 반 수 | 익 | 252,242,980 | 237,730,687 | 14,512,293 | 6.10 |
| VII. | 재 (| | 결 과 VI) | (103,854,222) | (82,507,620) | (21,346,602) | 25.87 |

- 고성군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220,923,529 천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40,684,745천원을 차감한 80,238,784천원이며, 총 11개의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 사업은 "농림해양수산"(25,047,845천원)과 "사회복지"(21,883,700천원)임. 또한 2017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2,866,965천원과 기타관 리운영비 3,603,704천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66,197천원, 자산처분손실 376,560천원, 기타 감가상각비 등 37,685,264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7회계연도 고성군의 재정운영결과는 (-)103,854,222천원으로 전년도의 (-)82,507,620천원보다 (-)21,346,602천원(25.87%) 증가하였는데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이 각각 1,964,343천원, 917,522천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5. 성과보고서

- 고성군에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 조의2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고성군은 본 회계연도의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23개)-정책사업목표(96개)-지표수(21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6개의 정책 사업목표와 21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 | ಸ) ವಿ. | 정책. | 사업 목표 | 성과지 | 표 달성 | 여부 |
|----------------|----------------|-----|--------|----------------|------|--------------|
| 부 서 명 | 전 략 목표수 | 개 수 | 지표수(A) | 초과달성, 달성(B) | 미달성 | 달성률 (A/B) |
| 계 | 23 | 96 | 216 | 175 | 41 | 81.02 |
| 의회사무과 | 1 | 1 | 2 | 2 | 0 | |
| 기획감사실 | 1 | 7 | 13 | 11 | 2 | |
| 미래전략실 | 1 | 5 | 10 | 10 | 0 | |
| 민원봉사과 | 1 | 4 | 11 | 8 | 3 | |
| 행 정 과 | 1 | 6 | 15 | 10 | 5 | |
| 재 무 과 | 1 | 3 | 5 | 5 | 0 | |
| 주민생활과 | 1 | 12 | 21 | 18 | 3 | |
| 행복나눔과 | 1 | 6 | 23 | 21 | 2 | |
| 문화체육과 | 1 | 4 | 6 | 5 | 1 | |
| 경제교통과 | 1 | 8 | 16 | 15 | 1 | |
| 안전건설과 | 1 | 7 | 13 | 11 | 2 | |
| 환 경 과 | 1 | 3 | 6 | 6 | 0 | |
| 녹지공원과 | 1 | 2 | 7 | 4 | 3 | |
| 해양수산과 | 1 | 2 | 7 | 7 | 0 | |
| 도시개발과 | 1 | 8 | 18 | 13 | 5 | |
| 보 건 소 | 1 | 2 | 8 | 6 | 2 | |
| 농업정책과 | 1 | 4 | 10 | 6 | 4 | |
| 친환경농업과 | 1 | 4 | 5 | 0 | 5 | |
| 축 산 과 | 1 | 1 | 5 | 5 | 0 | |
| 농식품개발과 | 1 | 1 | 3 | 2 | 1 | |
| 관광지사업소 | 1 | 2 | 3 | 2 | 1 | |
| 상하수도사업소 | 1 | 2 | 3 | 3 | 0 | |
| 상족암군립공원 사업소 | 1 | 2 | 6 | 5 | 1 | |

- O 고성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과 등 6개 실과는 100%를 달성한 반면, 기획감사실외 16개과는 미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다.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과지표는 목표 설정 및 측정방식을 일부만 반영하는 등성과지표의 설정과 목표치 산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도 확인되었고 성과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 사항이 미흡하였고 불합리한실적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채 권 현 황

(단위 : 처워)

| | | | | | (111 - 111) |
|-----|--------------|---------------|---------------|---------------|----------------|
| 구 | 분 | 전년도말 현 재 액 | 당해연도 발 생 액 |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 재 액 |
| 합 | 계 | 6,326,259 | 1,081,828 | 926,399 | 6,481,688 |
| 일 반 | 회계 | 3,844,541 | 46,570 | 46,862 | 3,844,249 |
| 특 별 | 회계 | 2,481,718 | 1,035,258 | 879,537 | 2,637,439 |
| 기타 | -특별회계 | 2,481,718 | 1,035,258 | 879,537 | 2,637,439 |
| | 소주변지역 원사업 | 2,440,338 | 1,029,078 | 844,156 | 2,625,260 |
| 사 | 회복지 | 41,380 | 6,180 | 35,381 | 12,179 |
| 7] | 그 | 0 | 0 | 0 | 0 |

O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4억 8,168만 8천원으로 확인되었다.

(2) 채 무

채 무 현 황

(단위 : 천원)

| 구 | 분 | 전년도말 현 재 액 | 발 생 액 | 상환소멸액 | 조정액 | 당해연도말 현 재 액 |
|-----|-----|---------------|-------|---------|-----|----------------|
| 합 | 계 | 816,400 | 0 | 442,000 | 0 | 374,400 |
| 일 반 | 회 계 | 816,400 | 0 | 442,000 | 0 | 374,400 |
| 특 별 | 회 계 | 0 | 0 | 0 | 0 | 0 |
| 기 | 그ㅁ | 0 | 0 | 0 | 0 | 0 |

O 검사결과 채무는 전년대비 4억 4,200만원이 감소한 3억 7,44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채무의 상환 예정은 다음과 같다.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 천원)

| 구 | 분 | 채무액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이후 | 비고 |
|-----|------|---------|---------|---------|------|------|------------|----|
| 합 | 계 | 374,400 | 225,200 | 149,200 | 0 | 0 | 0 | |
| 구승 | 채 | 0 | 0 | 0 | 0 | 0 | 0 | |
| 차 | 입 금 | 374,400 | 225,200 | 149,200 | 0 | 0 | 0 | |
| 채무부 | -담행위 | 0 | 0 | 0 | 0 | 0 | 0 | _ |

○ 채무상환예정액 374,400천원은 중앙정부(환경관리공단) 하수슬러지 설치 사업 차입금으로 전액 국고부담으로 상환될 채무로서 자체 채무는 전무함.

(3)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 구 분 | 전년도말 | | | 당해연도말 | |
|--------|-------|---------------|------------|------------|---------------|--|
| | 구 분 | 현재액 | ろ | 감 | 현재액 | |
| | 합 계 | 1,442,101,095 | 74,280,091 | 13,191,772 | 1,503,189,414 | |
| | 공용재산 | 171,755,381 | 9,764,167 | 2,624,204 | 178,895,344 | |
| 행 | 공공용재산 | 1,229,637,353 | 62,345,681 | 6,536,077 | 1,285,446,957 | |
| 정 재 | 기업용재산 | 0 | 9,320 | 0 | 9,320 | |
| 산 | 보존재산 | 7,091,589 | 1,372,485 | 1,564,272 | 6,899,802 | |
| | 소 계 | 1,408,484,323 | 73,491,653 | 10,724,553 | 1,471,251,423 | |
| | 일반재산 | 33,616,772 | 788,438 | 2,467,219 | 31,937,991 | |

○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61,088,319천원이 증가한 1,503,189,414천원이다. 주요 증가 내역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부지,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당항포 관광지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등이며, 감소내용은 죽계~진전 국도 용지, 군유지 일반재산 매각 등이다

(4) 물 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7 19 | 기나드마침케이 | 당해연도 증감액 | | 당해연도말 |
|---------|-----------|----------|---------|----------------|
| 구 분 | 전년도말현재액 | 취득 | 처 분 | 당해연도말 현 재 액 |
| 수 량 | 806 | 140 | 39 | 907 |
| 금 액 | 8,121,523 | 657,084 | 458,061 | 8,320,546 |

○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199,023천원이 증가한 8,320,546천원이 확인 되었다. 증가사유는 미니버스, 승용차, 화물차, 냉난방기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된 것이다.

Ⅲ. 개선 및 권고사항

□ 학림·청광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정산 재촉구

◎ 현 황

(단위: 백만원)

| 부서별 | 사업명 | 사업기간 | 총예산액 |
|-------|--------------|-----------|-------|
| 안전건설과 | 학림권역농촌마을개발사업 | 2010~2014 | 5,500 |
| 안전건설과 | 청광권역농촌마을개발사업 | 2011~2014 | 4,700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정산과 시설물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2017년 결산검사 시 조속한 정산과 시설물 인수인계를 권고하였음에도 2018년 3월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음.

◎ 시정 및 개선의견

- 노후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고
- 총괄부서에서는 시설별로 분석 인수실과를 지정하여 정확한 인수인계를 이행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철저

◎ 현 황

- 사업위치 : 고성읍 교사리 일원

- 사업기간 : 2017년~2020년(4년간)

- 사업량: 108,972 m²

- 총사업비 : 140억원

- 시 행: 고성군수(공공개발방식)

- 진 도: 토지매입 38,432 m², 27억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현재 우리군의 여건을 살펴보면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확정과 STX 조선의 구조 조정을 비롯하여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지역의 경제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여파로 개인사업자가 기조성한 공장부지도 산지를 훼손한 채 방치되고 있는 곳이 10여곳이 있음.
- 본사업 구상시기에는 예측치 못했던 여건 변경으로 순수군비 140억이 투자되는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됨.

◎ 시정 및 개선의견

 현 시점에서 사업의 계속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향후 재원조달 계획과 입주 수요를 정밀 검정한 후,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대독천 물길복원 및 체험둑방 황토길 조성시설 활용도 제고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내용 |
|--------------|-------|--|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 5,400 | 황토길조성 5.5km 전기시설 1식 경관교량 2개소 물길복원 6km 조경 및 쉼터등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2014년부터 54억이 투자된 대독천 물길 복원 및 체험둑방 황토길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나
- 투자된 사업비에 비해 군민의 이용도가 극히 저조하고 당초 목표한 관광자원 개발 효과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생각됨.
- 황토길도 황토 포장의 강도가 높아 걷기에 부적당하다는 여론과 이용객도 없는 밤시간에 조명을 밝게하여 전기세만 낭비한다는 지적들이 있음.

◎ 시정 및 개선의견

- 정책사업 선정시 사업효과를 정밀 진단하여 지역발전과 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당초사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권고함.

□ 맥전포 어촌어항 복합공간 음악분수 사후 관리 철저

◎ 현 황

- 조성년도 : 2011년

- 사 업 비 : 15억

- 연간운영비(2017년기준) : 82,000천원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2011년 완공된 맥전포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시행된 음악분수는 15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광객 유치등의 목적으로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음.
- 어항 내 설치되어 5년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인지도 미흡으로 관광객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야유회 장소로 전락하여 환경오염만 가중시킨 다는 여론임.
- 반면 매년 유지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8천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음.

◎ 시정 및 개선의견

- 관람객수과 어항 발전의 기여도 주민 여론등을 정밀 분석하여 타용도의 전환을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조치 하시길 권고함.

□ 고성읍 시가지 가로수 관리 철저

◎ 현 황

| 식재년도 | 수 종 | 식재주수 | 위 치 |
|-------|-----|------|------------|
| 2009년 | 먼나무 | 167주 | 1호광장~송학지하도 |
| 2010년 | 먼나무 | 49주 | 읍사무소~의회 |
| 2011년 | 먼나무 | 65주 | 읍사무소~의회 |
| 계 | | 281주 |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금년도 겨울철은 기상이변으로 추위가 극심하여 현재 고성읍 시가지에 식재된 먼나무 281주 중에서 30%정도는 고사하였거나, 고사 직전으로 생육 상태가 좋지 못함.
- 먼나무는 제주도에서 많이 자생하는 아열대성 수종으로 추위에 약한 수종임 향후 기상 이변등을 감안할 때 우리 고성지역의 가로수로 적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시가지내 고사 수목은 조속히 제거하여 시가지 경관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식재 수종에 대해서도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지역 기후에 맞는 품종을 선정하는 등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길 권고함.

□ 대가면 10리 벚꽃길 관리 철저

◎ 현 황

- 위치: 대가면 유흥리 ~ 갈천리 갈천저수지

연장: 5㎞ 내외수종: 왕벚나무수령: 20년 내외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대가면 10리 벚꽃길(천비룡사길)은 식재된 지 20년 가까이 되었고 생육 상태가 좋아 매년 봄이면 벚꽃길 터널이 형성되어 장관을 이루고 있음.
- 고성군민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찾을 정도로 명소화 됨으로써 매년 상춘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목관리가 되지 않아 점차 생육상태가 나빠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임.

◎ 시정 및 개선의견

- 야산의 잡목으로 인해 생육충돌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 군에서 운용하는 수목관리단을 투입 잡목제거와 정지, 시비작업을 실시하여, 10리 벚꽃길을 명품화 관광자원화 시킬 방안을 검토하길 권고함.

□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테크조성사업 이용률 제고

◎ 현 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 사업명 | 사업기간 | 총예산액 |
|--------|--------------|-----------|------|
| 관광지사업소 | 생태녹색관광 자원화사업 | 2016~2017 | 700 |

• 테크조성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비 | 사업 | 내역 | 사업기간 | 비고 | |
|------|--------|-------------------|-------------------|-----------|--|
| 스타함트 | 테크설치 | 면적 | 작量기 征 | "I Tr | |
| 448 | L=264m | $763\mathrm{m}^2$ | 2017.03.16.~06.15 | 2016년이월사업 |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마동호·간사지 일원에 형성된 갈대 군락지를 당항만과 연계한 역사,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한 2016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테크조성 사업이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 탐방객들의 이용률이 저조함.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당항포관광지사업소에서 본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주변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음.

- 많은 예산을 투입한 본 사업이 간사지 일원에 형성된 기존 갈대밭에 고성의 정체성을 지닌 당항포관광지와 연계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 보다 많은 탐방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활용도 제고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2017회계연도 결산액 차액발생

© **현 황** (단위: 원)

| 7 - | | | | | |
|----------|------|--------|-----------------|-----------------|-----------------|
| 금고 | ī | 2 분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잔액(금고보관) |
| | 합계 | | 75,522,971,316 | 400,761,788,913 | 174,761,182,403 |
| | | 계 | 563,739,983,581 | 397,221,829,613 | 166,518,153,968 |
| | 일 | 반회계 | 516,707,671,498 | 380,056,303,405 | 136,651,368,093 |
| | | 계 | 58,815,299,818 | 20,705,485,508 | 38,109,814,310 |
| | | 소계 | 47,032,312,083 | 17,165,526,208 | 29,866,785,875 |
| 농 | | 상수도 | 11,095,049,679 | 8,875,455,830 | 2,219,593,849 |
| 협 | | 하수도 | 3,467,485,689 | 780,917,310 | 2,686,568,379 |
| ᅌ | | 발전소 | 5,503,219,920 | 676,824,238 | 826,395,682 |
| | 특별회계 | 주차장 | 3,140,250,925 | 1,258,652,120 | 1,881,598,805 |
| 행 | | 수질개선 | 92,317,710 | 76,498,000 | 15,819,710 |
| | | 장기미집행 | 558,645,420 | 533,659,750 | 24,985,670 |
| | | 농어촌발전 | 956,372,105 | 137,287,620 | 8,819,084,485 |
| | | 사회복지 | 4,397,549,075 | 826,231,340 | 3,571,317,735 |
| | | 청사건립 | 9,821,421,560 | | 9,821,421,560 |
|)1] | | 소계 | 11,782,987,735 | 3,539,959,300 | 8,243,028,435 |
| 경남 은행 | 특별회계 | 중소기업육성 | 4,696,855,321 | 58,044,490 | 4,538,810,831 |
| | | 산업단지조성 | 7,086,132,414 | 3,381,914,810 | 3,704,217,604 |

| | 차액(금고-결산서) | | | | |
|-----------------|-----------------|-----------------|---------|----------------|----|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잔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잔액 |
| 575,522,393,456 | 400,761,211,095 | 174,761,182,361 | 577,860 | 577,818 | 42 |
| 563,739,405,721 | 397,221,251,795 | 166,518,153,926 | 577,860 | 577,818 | 42 |
| 516,707,671,498 | 380,056,303,405 | 136,651,368,093 | _ | _ | - |
| 58,814,721,958 | 20,704,907,690 | 38,109,814,268 | 577,860 | 577,818 | 42 |
| 47,031,734,223 | 17,164,948,390 | 29,866,785,833 | 577,860 | 577,818 | 42 |
| 11,095,049,679 | 8,875,455,830 | 2,219,593,849 | _ | _ | _ |
| 3,467,485,689 | 780,917,310 | 2,686,568,379 | _ | _ | - |
| 5,503,219,920 | 4,676,824,280 | 826,395,640 | _ | $\triangle 42$ | 42 |
| 3,140,190,925 | 1,258,592,120 | 1,881,598,805 | 60,000 | 60,000 | _ |
| 92,317,710 | 76,498,000 | 15,819,710 | _ | _ | _ |
| 558,645,420 | 533,659,750 | 24,985,670 | - | _ | _ |
| 8,956,372,105 | 137,287,620 | 8,819,084,485 | - | _ | _ |
| 4,397,031,215 | 825,713,480 | 3,571,317,735 | 517,860 | 517,860 | _ |
| 9,821,421,560 | | 9,821,421,560 | _ | _ | _ |
| 11,782,987,735 | 3,539,959,300 | 8,243,028,435 | _ | _ | _ |
| 4,696,855,321 | 158,044,490 | 4,538,810,831 | _ | _ | - |
| 7,086,132,414 | 3,381,914,810 | 3,704,217,604 | _ | - | _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2017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시 회계별 자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함에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사회복지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 결산서상의 내용과 고성농협금고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상의 계수(내용)가 일치하지 않음.

◎ 시정 및 개선의견

- 결산계수가 상이한 3개 특별회계 운용부서에서는 결산시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적인 사항들의 통계 숫자가 불일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바람.

□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

◎ 현 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5년 | | 2016 | 6년 | 2017년 | | |
|----------|---------------|--------|--------------|-------|--------------|-------|--|
| |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차액 |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차액 |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차액 | |
| 계 | 80,642 15,929 | | 86,939 6,297 | | 94,724 7,785 | | |
| 일반 회계 | 53,617 | 11,732 | 55,740 | 2,123 | 61,701 | 5,961 | |
| 특별 회계 | | | 31,199 | 4,174 | 33,023 | 1,824 |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순세계 잉여금의 연도별 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는 평균 6,605백만원, 특별회계는 3,398백만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도의 경우 전체 예산현액의 17.1%를 차지하고 있음.
-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요인은 세입초과, 집행잔액, 자금없는 이월액이며 추가 경정예산(결산) 세입예산 미반영, 불용잔액 발생으로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재정운용의 원칙에 따라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부서, 결산부서, 예산부서에는 해당연도의 지역경제상황 및 각종 요인등을 종합적 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 세입초과, 불용잔액 발생 등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매년 증가하는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 이월예산 최소화 미흡

◎ 현 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역 | | 기출액 | | 집행잔액 | | |
|---------|---------|---------|-------------------|-------------------|-----------------|--------|
| 丁亚 | 예산현액 | 시골댁 | 계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설생산적 |
| 계 | 555,157 | 400,761 | 80,299 (3.403) | 66,457 (2,906) | 13,842 (497) | 74,097 |
| 일반회계 | 496,701 | 380,056 | 75,569 (3,403) | 61,788 (2,906) | 13,781 (497) | 41,076 |
| 특별회계 | 58,456 | 20,705 | 4,730 | 4,669 | 61 | 33,021 |

^{※()}는 자금없는 이월액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의거 회계연도에 지출을 못할 경우 이월은 가능하나 2017년 일반회계의 경우 75,569백만원이 이월되어 전년도 이월액보다 24,281백만원이 늘어났고,
- 이중 명시이월 66,457백만원(12%), 사고이월 13,842백만원(2.5%)로서 특별회계 포함 전체 14.5%인 80,299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 또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154,39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8%의 미집행율을 보이고 있는 등, 매년 편성된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시정 및 개선의견

- 예산은 당해연도 내에서 추진할 사업비로서 신중을 기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여야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기 바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하여 편성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등을 판단하여 추경예산에 조정 검토하여 타사업예산 재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전액 이월사업 사전 검토 철저

○ 현 황
(단위: 천원)

| 부서별 | 사업명 | 예산현액 | 이월액 | 사유분석 |
|--------|---|------------|------------|-------------------------|
| 행복나눔과 | 어린이집 환경개선 | 99,190 | 99,190 | |
| 문화체육과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옥천사청동북 주변정비) | 29,400 | 29,400 | 추진지연 |
| 문화체육과 | 전수교육관 건립(고성오광대) | 15,800 | 15,800 | 추진지연(감리비) |
| 문화체육과 | 전수교육관 건립(고성오광대) | 3,000 | 3,000 | 추진지연(시설부대비) |
| 문화체육과 | 전통사찰 보수 정비(문수암) | 200,000 | 200,000 | 추진지연 |
| 문화체육과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문수암) | 3,905 | 3,905 | 추진지연 |
| 문화체육과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장의사) | 1,735 | 1,735 | 추진지연 |
| 안전건설과 | 감동저수지 개보수사업 | 400,000 | 400,000 | 추진지연 |
| 환경과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 34,000 | 34,000 | 추진지연 |
| 해양수산과 |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 | 66,900 | 66,900 | 추진지연 |
| 도시개발과 | 죽전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 300,000 | 300,000 | 추진지연 |
| 도시개발과 | 중촌2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 1,700,000 | 1,700,000 | 추진지연 |
| 도시개발과 | 정곡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 800,000 | 800,000 | 추진지연 |
| 도시개발과 | 봉치마을 도로 개설 공사 | 800,000 | 800,000 | 추진지연 |
| 도시개발과 | 행복주택 | 2,000,000 | 2,000,000 | 추진지연 |
| 도시개발과 | 공공실버주택 | 6,000 | 6,000 | 추진지연 |
|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개보수 | 195,354 | 195,354 | 추진지연(시설비) |
|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개보수 | 3,300 | 3,300 | 추진지연(감리비) |
|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개보수 | 1,346 | 1,346 | 추진지연(시설부대비) |
|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설치 | 462,238 | 462,238 | 추진지연(시설비) |
|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설치 | 8,942 | 8,942 | 추진지연(감리비) |
|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설치 | 2,000 | 2,000 | 추진지연(시설부대비) |
|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설치 | 26,820 | 26,820 | 추진지연(자산및물품취득비) |
| 농업정책과 | 귀농인의 집 운영 | 30,000 | 30,000 | 추진지연 |
| 농업정책과 |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도비) | 5,000 | 5,000 | 추진지연 |
| 농업정책과 | 농산물유통지원(도비) | 132,000 | 132,000 | 추진지연 |
| 농업정책과 |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120,000 | 120,000 | 추진지연 |
| 농업정책과 |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 14,000 | 14,000 | 추진지연(사무관리비) |
| 농업정책과 |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 200,000 | 200,000 | 추진지연(연구용역비) |
| 친환경농업과 | 양묘장 비닐하우스 설치 | 200,000 | 200,000 | 추진지연(시설비) |
| 축산과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 667,753 | 667,753 | 추진지연(민자보) |
| 축산과 | 액비저장조 지원 | 532,000 | 532,000 | 추진지연(민자보) |
| 축산과 |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 3,625,600 | 3,625,600 | 추진지연(민자보) |
| 축산과 | ICT활용 축산악취관리지원 시범사업 | 171,500 | 171,500 | 추진지연(기타보상금) |
| 농식품개발과 |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 7,560 | 7,560 | 추진지연(감리비) |
| 농식품개발과 | 6차산업창업지원 | 300,000 | 300,000 | 집행시기 판단착오 (자산및물품취득비) |
| 계 | 36건 | 13,165,343 | 13,165,343 |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하고자하는 사업의 목표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편성과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 위 11개실과 36건 13,165,343천원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지연 및 집행시기 판단착오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있어, 이는 전년도 (2016년)보다 18건에 9,368,151천원에 비해 141%가 증가한 사항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

- 향후 예산확보 전 꼭 필요한 사업인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확보와 편성된 예산에 대해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예산집행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 감액 조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사업 시행부서는 물론 예산운용 부서에서도 관심과 감독을 강화하여 효율적 예산운용이 되도록 할 것.

□ 순수군비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및 추경 미반영

◎ 현 황

(단위:천원)

| 해당부서 | 건당천만원이상 발 생 건 수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잔액 (불용액) |
|-------|--------------------|------------|------------|---------------|
| 21실과소 | 79 | 62,114,757 | 59,158,951 | 2,955,806 |

★ 세부사업 통계목 기준 : 잔액 천만원이상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예산은 한정된 세입으로 지역발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편성하고 체계적인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예산 과다 계상과 사업의 부진 등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고 있음.
- 전 실과소에서 공히 2017년도 순수군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 중 집행 잔액이 1천만원 이상 발생한 단위사업이 79건에 2,955,806천원인데도 결산추경 시까지도 감액시키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 함으로서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시키고 있음.

- 예산성립 후에는 수시로 그 집행상황을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과다한 집행
 잔액 발생으로 재원사장이 없도록 하고
- 1천만원 이상의 집행 잔액은 추경 시 반드시 감액처리 할 것.

□ 세출예산 결산액중 예산전액 미집행액 발생

◎ 현 황

(단위: 천원)

| 부 서 | 사업명 | 예산현액 | 불용액 | 비고 |
|---------|----------------|---------|---------|-------|
| 계 | 52건 | 542,680 | 542,680 | |
| 의회사무과 | 일반보상금 | 850 | 850 | |
| | 군의회의원상해부담금 | 43,000 | 43,000 | |
| | 법무및쟁송업무추진배상금등 | 45,000 | 45,000 | |
| 기획감사실 | 포상금 | 900 | 900 | |
| | 사무관리비 | 980 | 980 | |
| | 공공운영비 | 700 | 700 | |
| 미이보기되 | 기타보상금 | 1,000 | 1,000 | |
| 민원봉사과 | 공공운영비 | 480 | 480 | |
|) 기기 기 | 행사실비보상금 | 500 | 500 | |
| 행정과 | 정보화마을행사실비보상금 | 1,200 | 1,200 | |
| 즈미 제하되 | 재해구호활동보상금 | 20,000 | 20,000 | |
| 주민생활과 | 재해구호수혜금 | 5,200 | 5,200 | |
| | 장애인일자리지원 | 24,396 | 24,396 | |
| | 자치단체대행사업비 | 1,003 | 1,003 | |
| | 공공후견인사회복지사업보조 | 1,800 | 1,800 | |
| 행복나눔과 | 사회복지사업보조 | 120 | 120 | |
| | 일반보상금 | 1,300 | 1,300 | |
| | 입양아동지원 | 900 | 900 | |
| | 청소년방과후인전비 | 2,000 | 2,000 | |
| 문화체육과 | 역도대회행사운영비 | 4,000 | 4,000 | |
| 경제교통과 | 16년태풍피해복구시설비 | 76,000 | 76,000 | 이월사업비 |
| 환경과 | 석면구제급여지원 일반보상금 | 12,000 | 12,000 | |
| 전경각 | 공공운영비 | 400 | 400 | |
| | 자연발생유원지유지관리시설비 | 140,000 | 140,000 | 이월사업비 |
| | 여비 | 1,120 | 1,120 | |
| 녹지공원과 | 행사실비보상금 | 500 | 500 | |
| | 재료비 | 2,000 | 2,000 | |
| | 산림병해충인건비 | 6,000 | 6,000 | |
| | 생분해성어구보급 | 24,571 | 24,571 | |
| 체하스 1년리 | 조건불리수산직불 | 5,610 | 5,610 | |
| 해양수산과 | 불법어업지도단속 | 1,500 | 1,500 | |
| | 어업인교육보상금 | 1,600 | 1,600 | |

| 도시개발과 | 관문광장타당성조사시설비 | 20,000 | 20,000 | 이월사업비 |
|---------------------------------|-----------------|--------|--------|-------|
| | 농어촌보건소이전신축시설비 | 1,112 | 1,112 | |
| 보건소 | 산부인과운영의료구입비 | 2,660 | 2,660 | |
| 1.72 |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 | 250 | 250 | |
| | 공공운영비 | 656 | 656 | |
| 노시지하기 |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보조 | 18,000 | 18,000 | |
| 1 | 품목별농업인연구단체육성보상금 | 4,000 | 4,000 | |
| 0 11 0 71 71 | 농업농촌창업활성화 | 6,000 | 6,000 | |
| | 친환경농업단지교육행사운영비 | 900 | 900 | |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 재료비 | 2,000 | 2,000 | |
| | 친환경농업단지교육사무관리비 | 3,600 | 3,600 | |
| | 축사시설현대화 | 34,400 | 34,400 | 이월사업비 |
| 츠시코 | 반려동물등록재료비 | 1,000 | 1,000 | |
| <u></u> 독산과 | 축산물판매단계재료비 | 700 | 700 | |
| | 조사료품질관리사무관리비 | 3,700 | 3,700 | |
| 노시프케바퀴 | 미래먹거리개발행사실비보상금 | 1,000 | 1,000 | |
| 농식품개발과 | 농촌지도기반조성시설부대비 | 3,600 | 3,600 | |
| 사취스도기어스 | 소규모수도시설운영 | 5,780 | 5,780 | |
| 상하수도사업소 | 기초생활인프라시설부대비 | 4,000 | 4,000 | |
| 하일면 | 기간제근로자보수 | 2,692 | 2,692 |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사업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의 목표와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되도록 건전한 예산편성과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상기 내용과 같이 예산편성 후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액 없이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하였음.

◎ 시정 및 개선의견

- 향후에는 예산확보 전 꼭 필요한 사업인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확보와 편성된 예산액에 대하여는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업집행 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부득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액 조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바람.

□ 이월사업비 미집행 및 불용처리 철저

◎ 현 황

(단위: 천원)

| 부서명 | אואו | | 사업 | 申] | | | 집행기 | 잔액 | | 削 |
|-------|-------------------------------|---------|--------|--------|---------|---------|--------|--------|---------|---|
| | 사업명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고 |
| 경제교통과 | 2016년 10월 태풍피해복구 (공공건물) | 76,000 | | | 76,000 | 76,000 | | | 76,000 | |
| 녹지공원과 |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 | 140,000 | | | 140,000 | 140,000 | | | 140,000 | |
| 도시개발과 | 관문광장타당성 조사및기본계획 수립 | 20,000 | | | 20,000 | 20,000 | | | 20,000 | |
| 축산과 | 축산시설현대화 | 34,400 | 34,400 | | | 34,400 | 34,400 | | |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국·도비 지원사업 신청시는 사전에 수요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 당해연도 미집행으로 이월시에는 계속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시 분석 후 이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 위 4개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미집행하여 이월 시키고도 전액 반납하였음.

◎ 시정 및 개선의견

- 예산 신청전 사업필요성과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이월시에는 시행 가능 여부를 정밀 조사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기 바람.

□ 국고보조금 반납액 과다

◎ 현 황

• 사업별 보조금 반납내역(2017년)

(단위: 천원)

| 실 과 | 사업명 | 보조금수령액 | 반납금액 | 반납비율 |
|------------|----------------|---------|---------|------|
| 체제되 | 의료취약지 산부인과운영 | 73,600 | 65,341 | 89% |
| 행정과 |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 | 4,115 | 4,115 | 전액반납 |
| 경제교통과 | 사회적기업육성 | 40,115 | 22,238 | 56% |
| る利亚され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 129,000 | 98,457 | 77% |
| 녹지공원과 |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 8,400 | 6,720 | 80% |
| | 원예시설현대화 | 904,800 | 395,835 | 44% |
| 노어키스계디 | 딸기명품화 | 35,052 | 18,636 | 54% |
| 농업기술센터 | 벼육묘장설치 | 33,000 | 33,000 | 전액반납 |
| | 축산시설현대화 | 272,200 | 212,000 | 78%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국비보조금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매년 최선을 다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사업 추진의 적극성과 홍보부족 등 제반 사정으로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여 다시 반납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 됨.

◎ 시정 및 개선의견

- 확보 된 국·도비는 해당부서장을 비롯하여 실무자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반납금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함.

□ 국·도비 보조금 정리 미흡

◎ 현 황

(단위: 천원)

| 실 과 | 보조사업명 | 예산액(A) | 수령액(B) | 미수령액 (C=A-B) |
|-------------|------------------|-----------|-----------|-----------------|
| 계 | | 5,022,960 | 2,682,960 | 3,516,000 |
| 미래전략실 |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370,000 | 0 | 370,000 |
| 안전건설과 | 상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237,000 | 0 | 237,000 |
| 1 전 전 전 열 파 | 기초생활인프라(농업개발) | 1,319,000 | 840,000 | 479,000 |
| 도시개발과 | 동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1,269,000 | 0 | 1,269,000 |
| 축 산 과 | 액비 저장조 지원 | 266,000 | 854,000 | △588,000 |
| 축 산 과 |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 1,561,960 | 988,960 | 573,000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교부결정)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와 새로운 사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증액 및 감액 등을 추가경정 예산 등에 반영하여야 하나
- 중앙부처나 도로부터 일반적인 지원 또는 연말(12월중) 결정변경 통보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예산에 미편성 되었음.

- 당초예산 성립 후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부추진 계획에 따라 추진 하고 향후 변경, 취소 등 교부액 및 수령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 사업부서와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수시로 보조금 교부 상황을 확인하여,
 예산과 수납보조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리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임.

□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

◎ 현 황

(단위: 천원)

| 부서 | 회계명 | 2017년 5 | 발 예탁금 |
|------------|---------------|-----------|--------------|
| <u>ተ</u> ላ | 의세경 | 보통예금 | 정기예금 |
| 미래전략실 | 산업단지조성자금특별회계 | 904,217 | 2,800,000 |
| 주 민 생 활 과 | 사회복지특별회계 | 469,996 | 3,101,321 |
| 경제교통과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 38,810 | 4,500,000 |
| 경제교통과 | 주 차 장 특 별 회 계 | 962,758 | 900,000 |
| 재 무 과 | 고성군청사건립특별회계 | 75,421 | 9,746,000 |
| 농업정책과 |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 319,084 | 8,500,000 |
| | 상 수 도 특 별 회 계 | 1,719,202 | Ī |
| 상하수도사업소 | 하 수 도 특 별 회 계 | 1,093,892 | 1,500,000 |
| | 수질개선특별회계 | 15,819 | |
| 계 | 9개 | 5,599,199 | 31,047,321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2017년말 기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총9개 회계에 정기예금 31,047,321천원, 보통예금 5,599,199천원으로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으나 보통예금으로 관리되는 자금에 대해서도 자금 수급계획을 정밀 분석하여 수개월 단위로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 시정 및 개선의견

- 보통예금으로 관리되는 자금에 대해 월별 자금지출계획을 기초로 유휴자금 예치가능기간을 정확히 판단, 수개월 단위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여, 매년 증가하는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 하수도 특별회계 존치 검토

◎ 현 황

(단위: 천원)

| क्षेत्रभ | 세입예산 | | | | | 비고 | |
|----------|-----------|-----------|---------|-----------|----------------|---------|-----|
| 연도별 | 계 | 순세계잉여금 | 기타수입 | 계 | 집행잔액 (이월포함) | 지출액 | 집행율 |
| 2016 | 2,945,592 | 2,131,592 | 814,000 | 2,945,592 | 2,060,396 | 885,196 | 30% |
| 2017 | 3,175,351 | 2,471,351 | 704,000 | 3,175,351 | 2,394,434 | 780,917 | 25%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하수도 특별회계의 운영 상황을 분석하면 매년 예산의 20~30%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 매년 세출 규모도 2016년 20억, 2017년 23억중 7~8억정도만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반회계 운영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므로서 오히려 매년 20억 정도의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사료됨.

◎ 시정 및 개선의견

- 하수도 특별회계의 운영 실태를 정밀 진단하여 존치여부를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함.

□ 예비비 사용 철저

◎ 현 황

(단위: 천원)

| 실과명 |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
| 축산과 (긴급가축방역) | 1,283,190 | 937,977 | 345,213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지출 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등 지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
- 2017년도 축산과에서는 가축긴급방역을 위해 예비비 1,283,190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지출액은 937,977천원으로 345,213천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등 정확한 지출액 판단 없이 과다하게 지출결정하는 등 예비비 사용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시정 및 개선의견

- 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비비 사용시는 정확한 예측으로 필요액만 사용승인 하는 등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세입예산 편성 철저

◎ 현 황

(단위: 원)

| 부서 | 세입과목 | 예산액 | 징수결정액 |
|-------|---------------|------------|-------------|
| | 213-01 증지수입 | 0 | 96,520,420 |
| 민원봉사과 | 213-01 기타수수료 | 59,000,000 | 133,649,440 |
| 1천중사과 | 222 부담금 | 0 | 2,317,900 |
| | 223 과징금 및 과태료 | 50,500,000 | 141,610,320 |
| 계 | 4건 | |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당해연도의 제반여건(전년도세입, 경기전망 등)을 예측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민원봉사과에서는 세입이 확실시되는 증지수입 외 1건을 누락시키고 기타수수료 등 1건는 세입예산을 징수결정액보다 100%이상 적게 편성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이 부적절함.

◎ 시정 및 개선의견

-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예측으로 같은 사례가 없도록 시정 권고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반영 철저

◎ 현 황

(단위: 백만원)

| | | 전년도 | 예산 | 징 수 | 4 | 수 납 약 | 4 | | 미수 | 납내역 |
|------------------|---------|--------|---------|---------|----------|------------|------------|-------|----------|----------|
| 구 분 | 예산액 | 이월액 | 현액 | 결정액 | 수납 총액 | 과오납 반환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 결손 처분 | 다음 년도 |
| 계 | 445,412 | 50,820 | 496,700 | 524,521 | 518,745 | 2,037 | 516,708 | 7,813 | 1,249 | 6,564 |
| 지방세 | 28,000 | 0 | 28,000 | 34,672 | 32,138 | 1,050 | 31,088 | 3,584 | 850 | 2,734 |
| 세외수입 | 13,615 | 0 | 13,615 | 24,329 | 20,371 | 271 | 20,100 | 4,229 | 399 | 3,830 |
| 지방교부세 | 169,932 | 0 | 169,932 | 175,357 | 175,357 | 0 | 175,357 | 0 | 0 | 0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16,000 | 0 | 16,000 | 28,719 | 28,719 | 0 | 28,719 | 0 | 0 | 0 |
| 보조금 | 158,658 | 0 | 158,658 | 151,424 | 152,140 | 716 | 151,424 | 0 | 0 | 0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등 | 59,207 | 50,820 | 110,495 | 110,020 | 110,020 | 0 | 110,020 | 0 | 0 | 0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자체수입)에 따라 사업부서는 재원을 포착하고 그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 종합분석 미흡으로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20,475백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되어 당초 편성 이후 3회의 추경예산 편성기회가 있었음에도 미편성 하여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원인을 제공하였음.

- 세입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근접하게 추계하여 예산반영은 물론
- 징수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도 동시에 편성하기 바람.

□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부진

◎ 현 황

(단위: 원)

| n) 🖽 | 기스커지제 | الم | #] 소1 kail | 미수 | 납내역 |
|---------------------|----------------|---|---------------|-------------|---------------|
| 세 목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결손처분액 | 이 월 액 |
| 계 | 24,329,568,284 | 20,099,916,473 | 4,229,651,811 | 399,594,490 | 3,830,057,321 |
| 국유재산임대료 | 44,211,950 | 42,296,120 | 1,915,830 | 0 | 1,915,830 |
| 공유재산임대료 | 211,774,230 | 197,322,730 | 14,451,500 | 0 | 14,451,500 |
| 도로사용료 | 92,313,580 | 79,096,400 | 13,217,180 | 0 | 13,217,180 |
| 하천사용료 | 237,289,830 | 226,963,240 | 10,326,590 | 842,490 | 9,484,100 |
| 시장사용료 | 5,451,090 | 5,281,470 | 169,620 | 0 | 169,620 |
| 입 장 료 | 1,982,042,050 | 1,979,189,550 | 2,852,500 | 0 | 2,852,500 |
| 기타사용료 | 1,557,826,232 | 1,538,454,022 | 19,372,210 | 0 | 19,372,210 |
| 증 지 수 입 | 215,971,270 | 214,745,670 | 1,225,600 | 0 | 1,225,600 |
| 쓰레기처리봉투 판 매 수 입 | 608,733,230 | 605,602,530 | 3,130,700 | 0 | 3,130,700 |
| 재활용품수거 판 매 수 입 | 107,892,940 | 103,952,480 | 3,940,460 | 0 | 3,940,460 |
| 기타수수료 | 951,251,340 | 935,559,150 | 15,692,190 | 0 | 15,692,190 |
| 과태료 및 이행 강 제 금 등 | 894,791,850 | 391,011,730 | 503,780,120 | 1,156,480 | 502,623,640 |
| 그 외 수 입 | 13,503,210,322 | 13,392,913,431 | 110,296,891 | 0 | 110,296,891 |
| 지난년도수입 | 3,916,808,370 | 387,527,950 | 3,529,280,420 | 397,595,520 | 3,131,684,900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세외수입은 반대 급부를 수반하거나 벌과금 형태가 대부분인데 징수시기 일실 등으로 인하여 2017년 징수율은 82.6%로 저조하므로 세외수입 체납부서는 자체 징수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여야 하나 체납액 징수활동 부진으로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342,372천원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 체납부서는 독려전화, 현장방문, 체납고지서 발송과 압류처분 등을 통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처분 등, 징수사유발생 즉시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액이 감소하도록 하고
- 전 세외수입 담당부서는 부과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독촉 후 미납부시는 즉시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원천적으로 체납액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과태료(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 부진

◎ 현 황

(단위: 원)

| | 분 | 기스권자에 | 人口叫 | 미수납액 | 미수님 | 납내역 |
|------------|------------------|-------------|-------------|-------------|-------------|-------------|
| 구 | ਦ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미수납액 | 결손처분액 | 이 월 액 |
| | 계 | 794,665,500 | 300,797,380 | 493,868,120 | 121,833,950 | 372,034,170 |
| 재무과 | 부 동 산 실 거래위반등 | 119,735,050 | 10,392,550 | 109,342,500 | 82,005,860 | 27,336,640 |
| 환경과 | 페 기 물 관리법위반 | 91,172,620 | 44,966,000 | 46,206,620 | 21,318,000 | 24,888,620 |
| 도 시 개발과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 421,358,500 | 170,149,410 | 251,209,090 | 18,510,090 | 232,699,000 |
| 농 업 정책과 |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 | 162,399,330 | 75,289,420 | 87,109,910 | 0 | 87,109,910 |

※ 차량관련 과태료 제외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2017회계년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납율이 38%로 저조하며,
- 재무과 과태료 27,337천원, 환경과 과태료 24,888천원, 도시개발과 이행 강제금 232,699천원, 농업정책과 이행강제금 87,110천원, 총 372,034천원의 이월 체납액이 과다발생 하였음.

- 재무과, 환경과, 도시개발과, 농업정책과 등 체납부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압류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공매처분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은 물론 체납되면 결손처분하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부서별 자체 징수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바람.
- 특히 체납사유가 거주불명자, 부도·폐업, 무재산의 경우에는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차량관련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 부진

○ 현 황(단위: 원)

| _ | 7 H | 기 수 과 기 시 | አ ነ | #] & 1L All | 미수님 | 갈내역 |
|-----------------|----------------------|----------------|---------------|---------------|-------------|---------------|
| ٦ | 구 분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미수납액 | 결손처분액 | 이 월 액 |
| | 계 | 10,897,466,860 | 6,571,391,360 | 4,326,075,500 | 396,850,830 | 3,929,224,670 |
| | 소 계 | 7,456,293,030 | 6,313,255,760 | 1,143,037,270 | 172,459,040 | 970,578,230 |
| 재 무 과 | 자 동 차 세 (현 년 도) | 6,427,791,720 | 5,795,964,610 | 631,827,110 | 8,931,790 | 622,895,320 |
| <u> 과</u> | 자 동 차 세 (지난년도) | 1,028,501,310 | 517,291,150 | 511,210,160 | 163,527,250 | 347,682,910 |
| 민 | 소 계 | 891,560,330 | 111,481,950 | 780,078,380 | 11,463,000 | 768,615,380 |
| 원 봉 사 | 정기검사등 (현년도) | 91,688,180 | 51,014,420 | 40,673,760 | 0 | 40,673,760 |
| 사 과 | 정기검사등 (지난년도) | 799,872,150 | 60,467,530 | 739,404,620 | 11,463,000 | 727,941,620 |
| 경 | 소 계 | 2,549,613,500 | 146,653,650 | 2,402,959,850 | 212,928,790 | 2,190,031,060 |
| 제교 | 의무보험등 (현년도) | 395,335,330 | 49,229,250 | 346,106,080 | 1,156,480 | 344,949,600 |
| 통 과 | 의무보험등 (지난년도) | 2,154,278,170 | 97,424,400 | 2,056,853,770 | 211,772,310 | 1,845,081,460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재무과 자동차세 970,578천원, 민원봉사과 정기검사 등 과태료 768,615천원, 경제교통과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2,190,031천원으로 차량관련 이월 체납액이 3,929,224천원이며,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60%에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함.

- 차량관련 체납세 징수를 위해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합동으로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 및 압류차량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 자동차세 및 과태료의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재산 및 거주불명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과 사실상 멸실·소멸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 등 체납(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발생 최소화

◎ 현 황

○ 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 계 | | 사 | 유 별 | | | 비고 |
|-------|-----------|---------|---------|---------|---------|---------|-----|
| T ਦ | (환급액) | 행정기관착오 | 납세자권리구제 | 납세자착오 | 국세경정 | 기타 | 114 |
| 계 | 2,081,627 | 263,281 | 21 | 717,380 | 371,225 | 729,720 | |
| 지 방 세 | 1,050,373 | 218 | 21 | 676,778 | 371,225 | 2,131 | |
| 세외수입 | 1,031,254 | 263,063 | | 40,602 | | 727,589 | |

○ 회계별 (단위: 천원)

| _ | 구 분 | 계 | | 사 | 유 별 | | |
|----------|-------|-----------|---------|---------|---------|---------|---------|
| | ਾ ਦ | (환급액) | 행정기관착오 | 납세자권리구제 | 납세자착오 | 국세경정 | 기타 |
| | 계 | 2,081,627 | 263,281 | 21 | 717,380 | 371,225 | 729,720 |
| (ا | 소 계 | 2,037,583 | 263,281 | 21 | 682,824 | 371,225 | 720,232 |
| 일반 회계 | 지 방 세 | 1,050,373 | 218 | 21 | 676778 | 371,225 | 2,131 |
| | 세외수입 | 987,210 | 263,063 | | 6,046 | | 718,101 |
| 특별 | 소 계 | 44,044 | | | 34,556 | | 9,488 |
| 회계 | 상수도 | 34,537 | | | 34,537 | | |
| (세외 | 하수도 | 9,441 | | | 19 | | 9,422 |
| 수입) | 주차장 | 66 | | | | | 66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2017년 회계년도 지방세 과오납은 1,050백만원, 세외수입은 1,031백만원 총 2,081백만원이며, 과오납의 주된 사유는 납세자 착오, 국세청 경정과 기타연말정산(지방소득세)등의 사유로 환급한 것은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사유로 과도한 환급액이 발생한 것은 귀책사유의 소재를 떠나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될 수 있음.

◎ 시정 및 개선의견

- 행정기관(타시군) 및 과세기관 착오의 사유로 과오납 반환액 발생은 납세자에 대한 신빙성의 결여로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함으로 부과 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 2017년도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사업 정산 미흡

◎ 현황

-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단위: 천원)

| | 예 산 | 내 역 | 행사기간 | 비고 | |
|--------|--------|--------|--------|-------------------|--------|
| 계 | 도비 | 군비 | 자담 | 2017.10.27.~10.29 | 투장제기시기 |
| 80,067 | 20,000 | 20,000 | 40,067 | (3일간) | 통합행사실시 |

- 동 행사와 함께 수산물 판매 홍보사업,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과 제7회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등산 축제를 병행 개최하여 사업 홍보와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등 큰 효과를 거양하였음.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본 사업을 정산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집행시에는 직접 계좌 이체하거나 보조 사업에 카드를 이용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정산시 수산물 축제 교환권 지급시 2회에 5,172천원을 현금 지급하였음.

◎ 시정 및 개선의견

- 사업의 정산 및 지도 점검시 계좌이체 및 카드를 사용토록하고 보조사업의 집행규정에 의거 현금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가축 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정산 미흡

◎ 현 황

(단위:천원)

| 사업추진사항 | | 사 업 비 | | | | | | |
|------------|----------|---------|--------|--------|--------|---------|--------|--|
| 지 원 가구수 | 사업내용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융자 | 자담 | |
| 10 | 스키로더외 2종 | 311,200 | 46,000 | 13,800 | 32,200 | 138,000 | 81,200 | |
| 2 | 퇴비액비화 | 20,770 | 3,746 | 1,124 | 2,662 | 11,238 | 2,000 |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고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보조 사업비 교부 결정시 정산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와 현지 출장복명으로 확인 처리하여 정산검사를 미실시하였음.

◎ 시정 및 개선의견

- 지방보조금사업 교부결정시 사업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개인별 적합심사와 정산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덩굴류 제거사업 적극 추진

◎ 현 황

- 산림 및 주요도로변 가시권의 덩굴류 제거사업 시행으로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및 경관조성과 도로변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 하여 사업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있음.

- 사업추진내역

(단위:천원)

| 201 | .6년 | 201 | .7년 | 2018년 추진계획 | | |
|---------------|-----|--------------------|--------|------------|---------|--|
| 사업실적 예산액 | | 사업실적 | 예산액 | 사업실적 | 예산액 | |
| 17.6ha 18,953 | | $oldsymbol{50}$ ha | 57,666 | 180ha | 237,296 | |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2019년도 덩굴류 피해 면적 조사결과 동해면 내곡리 외 44개소 400ha 사업 추정예산 527,324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 본 사업은 산림청 권장공정(물리적, 화학적 제거방법)과 지속, 반복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음.

◎ 시정 및 개선의견

- 덩굴류 제거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사업의 효과 거양을 위하여 부족 예산전액 지원을 권고함.

□ 성과분석 결과 원인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미검토

◎ 현 황

- 성과분석 시 성과미달성, 초과달성 13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과 향후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여 효과를 거양토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재무과 군세 목표액 달성 137% 세무조사를 위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실적 196%, 안전건설과 풍수해보험 158%는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사항 검토를 미실시 하였으며,
- 경제교통과 일자리센터 매칭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원인분석 미실시와 행정과 국내외 교류 활동외 1건, 도시개발과 도시시설 정비외 1건은 향후 개선사항 검토를 미실시 하였음.

◎ 시정 및 개선의견

- 성과 분석 130% 초과달성 및 미달성 성과지표 단위사업에 대하여 금후 원인 분석과 향후 개선사항 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 거양 및 미비점을 보완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성과 보고서 작성 철저

◎ 현 황

- 기획감사실 지원인원수, 민원봉사과 자체 친절교육 외 7건, 행복나눔과 청소년 참여증진 및 우대사업, 문화체육과 무형문화재 지원 실적, 경제 교통과 교통사고 감소율, 도시개발과 농어촌 도로개선 실적은 2016년, 2017년 달성성과 실적 산출시 계획과 실적이 있는데도 0%로 잘못 기재되었으며, 여타 실과에서도 계획실적 계수가 상이한 사례가 있음.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결과 등 그 밖의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과지표 달성현황 표상 충분한 검토없이 계획 및 실적을 소홀이 작성하였음.

◎ 시정 및 개선의견

- 금후부터는 결산서 달성현황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 제출 바람.

□ 성과지표 단위사업 달성 성과 작성 철저

◎ 현 황

- 정책사업 목표는 단위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에 의하여 성과 지표의 측정 방법, 목표의 적합성과 실적치 측정 타당성을 고려하여 달성 성과를 산정 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위사업 기정예산 미집행과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도 100% 달성 성과로 평가한 사례가 있음.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2017 회계년도 결산서 3-3책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의하면 일부 단위사업비 미집행, 명시·사고이월로 사업 달성 성과가 미흡한데도 100% 달성 성과로 평가되었음.

◎ 시정 및 개선의견

- 단위 사업의 목표달성과 실적치를 정확히 분석하여 달성 성과를 산정하고, 단위사업 미집행, 명시·사고이월액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성과지표 목표치 산정 미흡

◎ 현 황

- 성과지표 목표치 산정은 예산투입지표, 추진과정과 결과 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도와 달성 노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환경과 스레트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시설에 대한 지원시설수를 목표치로 동일하게 산정하고, 행복나눔과 복지사업 운영 개소수, 도시개발과 장기 미집행 편입보상금 지급, 상하수도사업소 급수 보급률(가구)도 목표치를 동일하게 산출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도 100% 달성토록 목표치를 산정하였음.

◎ 시정 및 개선의견

- 금후 성과지표 목표치 산정시에는 전년도 대비 성과 수준향상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목표치 산정을 권고함.

Ⅳ. 수범사례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 사업기간: 2017. 3월 ~ 12월
- 사 업 비: 380,430천원
- 사 업 자: 고성읍 독실단지(대표자: 이**)외 27개소
- 사업내용: 친환경 벼 재배단지 운영에 따른 영농비용 지원

□ 수범사례

□ 현황(사업개요)

- 사 업 명: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영농자재 자체제조 및 활용 으로 시판 구입가 대비 20~30% 절감되어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 제초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미사용으로 토양환경 및 자연생태계가 복원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하게 됨.
- 친환경 벼 재배단지의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로 안전농산물 생산
 - 2017년 친환경인증 면적: 384.3ha(유기 267ha, 무농약 117.3ha)
- "생명환경농법"이 농촌진흥청 친환경농업 권장기술로 등재되었으며 "생명환경 쌀"은 2017년 경남 6대 우수 브랜드 쌀에 선정됨.
- 고성군의 친환경농업이 2017년 경남 생태농업대상 기관 우수상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30백만원을 받았으며, 동해면 법동단지 대표자 김경모는 개인 우수상으로 상사업비 5백만원을 받음.

□ 기대효과

- 농자재 자체 제조·사용으로 경영비 절감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 토양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향후 발전방안

- 지속적인 친환경 벼 재배단지 지원으로 자연환경 보전 및 농가소득 증대
- "생명환경 쌀" 전국 명품 브랜드로 육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7년 스포츠마케팅 추진

○ 사업기간: 2017. 1월 ~ 12월

○ 사 업 비: 446,500천원

○ 사업내용: 전국(도)규모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 우수사례

- 조선경기 불황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제40회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제65회 전국춘계남자역도대회 등 15개 전국(도)단위 대회 유치와
-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서 벗어난 연중 전지훈련팀 유치에 적극 나서 축구, 역도, 태권도 등 12개 종목에서 681개팀, 13,959명(연인원 108,879명)을 유치하여 숙박업, 음식점, 목욕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큼.

□ 유치실적

○ 전국(도)규모 대회 유치: 15개 대회, 15,880명

| 대 회 명 | 참가 인원 | 대회 일수 | 대 회 명 | 참가 인원 | 대회 일수 |
|--------------------------------------|----------|----------|----------------------------|----------|----------|
| 2017시즌 동계스토브리그 | 400 | 14 | 2017경남협회장기씨름대회 | 100 | 2 |
| 제65회 전국춘계남자역도대회 및 제18회 전국동호인 역도대회 | 830 | 8 | 제5회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검도대회 | 800 | 2 |
| 문체부장관배 제40회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 3,000 | 13 | 제31회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 2,500 | 2 |
| 제7회고성공룡컵리틀k리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 1,500 | 2 | 제1회 군수배골프대회 | 250 | 1 |
| 2017경남도지사배고성전국 마라톤 대회 | 2,300 | 1 | 제1회 고성고룡이배 경남오픈 탁구대회 | 700 | 2 |
| 제8회 군수배전국수영대회 | 500 | 1 | 제41회 경남역도연맹회장기 역도대회 | 200 | 3 |
| 제16회 군수배전국테니스대회 | 400 | 2 | 2017고성공룡배경남 그라운드 골프대회 | 400 | 1 |
| 제1회경남축구협회장기 사회인생활 축구대회 | 2,000 | 2 | | | |

○ 전지훈련팀 유치: 12개종목, 681팀, 13,959명(연인원 108,879명)

| 종 목 | | 팀수 | 인 원 | 연인원 | 중 | 목 | 팀수 | 인 원 | 연인원 | |
|-----|---|----|-----|--------|--------|----|-----|-----|-----|-------|
| 축 | | 구 | 304 | 10,156 | 74,724 | 세팍 | 타크로 | 24 | 319 | 6,669 |
| 역 | | 도 | 161 | 1,690 | 14,440 | 궁 | 도 | 85 | 619 | 4,952 |
| 복 | | 싱 | 11 | 205 | 1,465 | 씨 | 름 | 32 | 292 | 744 |
| 태 | 권 | 도 | 24 | 260 | 1,755 | 골 | 五 | 15 | 40 | 1,056 |
| 농 | | 구 | 10 | 118 | 354 | 탁 | 구 | 1 | 10 | 70 |
| 육 | | 상 | 6 | 70 | 1,210 | 야 | 구 | 8 | 180 | 1,440 |

□ 지역경제 파급효과: 9,819,726천원

- 전지훈련팀 유치: 74천원 × 108,879명 = 8,057,046천원 ※ 경제효과 산출기준: 74,000원 × 연중인원
- 전국(도)단위 대회 유치: 74천원 × 3일 × 7,940명 = 1,762,680천원
 ※ 경제효과 산출기준: 74,000원 × (참가선수인원×0.5) × (대회기간×0.5)

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1. 공무직근로자 전환 및 인력관리 철저

1) 전년도 권고사항

- 고성군 소속 공무직근로자 148명 중 82명이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그 중 64명이 2016년에 전환되었음.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 고용 시 공무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인력관리를 소홀히 하여 대규모 전환사태 발생, 그로 인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져 고성군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하였음.

2) 조치결과 및 검토

- 2016년 4월 전환완료 후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정수는 163명이었으나 퇴직, 민간위탁 후 고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에 따라 정원관리 결과 현재 158명으로 5명 감하였음.

2. 학림·청광 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정산 촉구

1) 전년도 권고사항

- 학림·청광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대행 국책사업으로
- 2014년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6년도 결산검사 시에 조속히 정산절차(사업비결산, 이자반납, 시설물 인수인계)를 관련 규정에 의거 이행치 않고 있으며
- 준공 후 3~5년이 경과되므로서 안전난관, 화장실 등 대부분의 시설 물이 하자 또는 노후화로 파손된 채 방치하고 있음.

2) 조치결과 및 검토

- 지적이후 해당부서의 합동점검과 보완공사 등 일부 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인수인계가 완료되지않아 부적정.

3. 각종 건축공사 부실시공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대책촉구

1) 전년도 권고사항

- 건축공사의 경우 전문지식 없이는 수행이 어려운 중요 업무임에도 농업기술센터, 행복나눔과, 주민생활과 등 시설직이 전무하여, 일반직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실건축, 예산낭비 소지가 상존하고 있음.

2) 조치결과 및 검토

- 지적이후 건축직 1명 배치 완료하였고, 행복나눔과는 충원 승인 후 응시자가 없어 결원이였으나, 금년도 중 배치 예정으로 적정함.

4.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보험 가입 촉구

1) 전년도 권고사항

-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은 등급별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보험에 가입하 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현재 보험가입시설은 319개소 중 71개소로 가입률이 저조함.

2) 조치결과 및 검토

- 지적이후 319개소 100% 보험가입 조치하여 매우 적정함.